

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2. . .
발 의 자	김정도 의원 외 12명

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2. . .

발 의 자 : 김정도 · 김낙관 · 김민성 · 김원섭
김재우 · 박교상 · 소진혁 · 신용하
이명희 · 이정희 · 장미경 · 정지원
허민근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- 가. 노유자시설인 경로당은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복지시설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함.
- 나.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하지만 지원근거가 미비하며, 특히 준공연도가 오래되거나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 내 경로당의 경우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이 있음.
- 다. 이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에 한하여 예외규정을 신설하고, 이를 통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원조건 신설(안 제5조제1항제3호라목)
 - 안 제15조 단서 신설에 따른 지원조건 신설(입주민 공유)
- 나. 공동주택 내 적용제외 단서 신설(안 제15조)
 -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이면서 세대수 300세대 이하의 경우
- 다. 부칙 신설(제2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노인복지법」 제36조, 제37조 및 제47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입주민공유(제15조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)

제15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이면서 세대수 300세대 이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제6호의 “경로당의 보수”를 “경로당의 보수(300세대 이하 제외)”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5조(지원조건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지원 대상 사업별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		제5조(지원조건) ①	-----	
1. · 2. (생략)		1. · 2. (현행과 같음)	-----	
3. 리모델링 및 개보수 : 경로당 건축 부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있는 경로당. 이 경우 경로당 건축 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.		3.	-----	
가. ~ 다. (생략)	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	-----	
<u><신 설></u>		<u>라. 입주민공유(제15조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)</u>	-----	
② (생략)		② (현행과 같음)	-----	
제15조(공동주택 내 적용제외) 「주택법」 또는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및 단지 형		제15조(공동주택 내 적용제외)	-----	

태로 이루어진 지역의 경로당은
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
제외한다. <단서 신설>

----- . 단, 사용검사 후 20년
이상이면서 세대수 300세대 이
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노인복지법」

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

1.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,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2. 경로당 :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하략>

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·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·보급하여야 한다.

⑤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47조(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구미시 경로당 설치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 : 경로당 리모델링 및 개보수 등에 따른 세출 발생

2. 비용추계의 전제

1) 리모델링 및 개보수비

(1) 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중 어느 하나 이상이 구미시, 마을회, 노인회, 입주민공유(사용검사 후 20년이상이면서 세대수 3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)에 속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계한다.

(2) 최근 5년간 평균 소요비용에서 조례제정에 따른 지원범위 확대분을 반영하여 추계한다.

2) 리모델링 및 개보수비용은 최근 5년 평균 표준건축비 단가 상승률 1.2%를 매년 적용한다.

3)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개년으로 한다.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연도 구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세입	소 계(a)						
세출	리모델링	58,000	59,160	60,343	61,549	62,779	301,831
	개 보 수	330,600	337,212	343,956	350,835	357,851	1,720,454
	소 계(b)	388,600	396,372	404,299	412,384	420,630	2,022,285
□ 총 비용(a-b)		388,600	396,372	404,299	412,384	420,630	2,022,285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연도 구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국 비							
도 비							
시 비		388,600	396,372	404,299	412,384	420,630	2,022,285
민 간							
기 타							
합계		388,600	396,372	404,299	412,384	420,630	2,022,285

※ 시비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도비는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음

5. 부대의견

경로당 리모델링 및 개보수 예산은 추정비로서 신청수요에 따라 소요액이 변동될 수 있음

6. 작성자 :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정책담당 노세운(054-480-5152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리모델링 · 개보수비

(단위:천원)

구 분	대상범위(경로당수)		연간소요액 (최근 5년 평균)	소요액 (연간)	추계근거 (연간)	비 고
	현행	조례제정시				
리모델링	249	290(116%)	50,000	58,000	$50,000 \times 1.16 = 58,000$	표준건축비 단가 상승률 1.2%를 매년 적용
개 보 수	249	290(116%)	285,000	330,600	$285,000 \times 1.16 = 330,600$	

2. 리모델링 및 개보수 대상 경로당

구 분	현행 (계획)	조 례	비 고
리모델링	부지 및 건물이 구미시, 마을회, 노인회	부지 및 건물 중 어느하나 이상의 소유권이 구미시, 마을회, 노인회, 입주민 공유(제15조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)에 속하 는 경로당 제15조(공동주택 제외) (단서조항)단,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이면서 세대수 300세대 이 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	공동주택 경로당 151개소중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이면서 세대수 300세대 이하 경로당 41개 대상으로 추계
개보수	”	부지 및 건물 중 어느하나 이상의 소유권이 구미시, 마을회, 노인회, 입주민 공유(제15조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)에 속하 는 경로당	공동주택 경로당 151개소중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이면서 세대수 300세대 이하 경로당 41개 대상으로 추계

		제15조(공동주택 제외) (단서조항)단,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이면서 세대수 300세대 이 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	
--	--	---	--

3. 개보수비 현황(최근 5년)

(단위:천원)

구 분		연도별 예산 현황				
		2018	2019	2020	2021	2022
합 계		325,000	390,000	150,000	420,000	140,000
시설비 (구미시소유)	도비	100,000	-	-	140,000	
	시비	175,000	340,000	100,000	240,000	100,000
민간자본보조	시비	50,000	50,000	50,000	40,000	40,000